

■조계종 사태 한달...여기저기 '비틀'

# 종무행정 이원화 사찰 참배객 급감

11일로 한달을 맞은 조계종 사태. 곳곳에서 종무행정과 각종 사업의 차질, 법회 참여율 저하 등 파장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조계사 맞은 편 천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총무원이 9일부터 일반 종무행정 업무 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만 정화회의도 10일부터 승적증명금 업무 실시하고 있어 민원업무 창구가 2원화 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도심 포교당 신도들의 법회 참여율이 많게는 50%까지 격감하는 등 불자들의 자괴감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총무원이 정** 상 업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종무행정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신청자가 예년의 30% 정도로 줄어 종무행정 참여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 분담금 납부율도 바닥을 뚫고 있다. 이번 사태로 업무 차질이 가장 심한 곳은 포교원. 11월 22일 제4회 포교사 고시는 시행했으나 28일로 예정됐던 직장직능 시행단체장 연수교육은 치르지 못했다. 11월 24일로 예정됐던 '국방장관 초청 군종장교 파견 종교단체 대표자 간담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매년 실시 해 온 포교대상 시상관련 업무는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왜곡 폄하 사례 발표회'와 포교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포교원측** 각 교구본사를 비롯한 각사찰과 도심 포교당은 종단 사태로 인한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재관리료 징수 사찰은 경제 한파와 계절적 영향에도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 실추로 탐방객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정산되지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 30%가량 탐방객이 줄어든 것이란 관리료 사찰들의 예상이다. 신도들의 법회 참석률도 11월 11일과 30일 승려대회 직후에는 50%까지 줄어든 사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도심포교당의 경우 초심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도심포교당이 운영되는 한 스님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새불자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므로 도심포교당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선 군법당도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 국방부 호국 원광사. 부산 금련사의 경우 법회 참가 사병과 일반인 불자들이 절반 가량 줄었다는 것. **불사차질** 국제구제금융 차제에서 기복이나 불사에 차질을 빚어 온 사찰들은 이번 사태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도들의 시주금 격감과 관심부족으로 더 이상 불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육군항공사령부 비승사와 남양주 철마사의 경우 불탑 신축공사 지원금과 화주 동참이 끊겨 불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사판매 감소** 서울과 부산 대진 등지의 대규모 불사 전문 서점들이 의하면 독자들의 발길이 지난 한달 동안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매출도 30%이상 줄어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들은 부끄럽고 아픈 사태를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를 거둔다게 하기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새불자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므로 도심포교당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문화를 관리료 징수 사찰은 경제 한파와 계절적 영향에도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 실추로 탐방객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정산되지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 30%가량 탐방객이 줄어든 것이란 관리료 사찰들의 예상이다. 신도들의 법회 참석률도 11월 11일과 30일 승려대회 직후에는 50%까지 줄어든 사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도심포교당의 경우 초심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도심포교당이 운영되는 한 스님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새불자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므로 도심포교당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선 군법당도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 국방부 호국 원광사. 부산 금련사의 경우 법회 참가 사병과 일반인 불자들이 절반 가량 줄었다는 것. **불사차질** 국제구제금융 차제에서 기복이나 불사에 차질을 빚어 온 사찰들은 이번 사태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도들의 시주금 격감과 관심부족으로 더 이상 불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육군항공사령부 비승사와 남양주 철마사의 경우 불탑 신축공사 지원금과 화주 동참이 끊겨 불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사판매 감소** 서울과 부산 대진 등지의 대규모 불사 전문 서점들이 의하면 독자들의 발길이 지난 한달 동안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매출도 30%이상 줄어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들은 부끄럽고 아픈 사태를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를 거둔다게 하기위해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새불자 만들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므로 도심포교당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 정화회의 총무원 청사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 내용

### 판결요지

가. 원칙적으로 종교 단체 내부의 분쟁은 통상 그 분쟁이 신앙과 교리를 둘러싼 것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상 그러한 분쟁의 해결은 종교단체 내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나, 이 사건 분쟁은 조계종 종단의 종헌과 그 하위 규범, 관례 등의 해석에 기하여 그 객관적 해결이 가능하고, 그 분쟁의 양상이 단순한 이념 내지 교리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양상을 띠면서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등 사법적 해결의 필요도 절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충분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그대로 전체 대중에 모여 각기 충분한 의견개진들 통해 만장일치로 합일된 의견을 창출해 내는 불교 교우의 의견수렴방식이 있었고, 조계종 종단 내에서도 위와 같은 유례에 기반 '전국승려대회'의 존재가 초충원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다만, 조계종 종단 내에서도 종헌을 최상위법으로 여는 여러 내부 규율이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통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국승려대회'의 개최 내지 그 결의에 대한 초충원적 효력 부여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승원주의 총무원장 재출마로 촉발된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피신청인들로서는 조계종 종단 내에서 종헌 및 선거관련 규정들에 근거하여 그 위법성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가사 승원주가 총무원장 선거에서 재차 당선된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 그 효력의 효력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쟁이 통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불가피하게 초충원적 효력이 있는 '전국승려대회'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승원주가 총무원장 선거에서 재차 당선된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 그 효력의 효력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분쟁이 통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불가피하게 초충원적 효력이 있는 '전국승려대회'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승원주가 총무원장 선거에서 재차 당선된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 그 효력의 효력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 또한, 조계종 종단에서는 종헌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그 종헌상 종정에 총무원장을 선임하거나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전국승려대회를 소집하는 등의 권한이 관례상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분쟁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있다고 보지 아니하므로, 율령의 효력에 불구하고, 1998. 11. 11. 자 전국승려대회의 결의가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1998. 11. 11. 자 전국승려대회에 의하여 조계종 종단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인 정화개혁회의가 조계종의 총무원 청사를 이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들 점유, 사용권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승원주도 총무원장 후보에서 사퇴하여 사실상 더 이상의 분쟁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조계종 종단의 모든 승려들과 함께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총무원청사를 새로 건설하고, 조계종 종단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판결 이유

1. 본안절판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으로서 신청인 종단을 대표하던 신청인 승원주는 신청인 종단의 최고지도자인 종정의 지위에 따라 개최된 1998. 11. 11. 자 전국승려대회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 같은 달 14. 자로 개최된 신청인인원회의가 위 전국승려대회의 해임결의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승원주 또는 위 승원주를 위하여 임명된 총무원장 권한 대행 총무원장은 신청인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승원성 및 총무원장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다루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11. 11. 자로 개최된 전국승려대회에 신청인 종단내에서 전 통적으로 초충원(超宗源)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온 '전국승려대회'의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1998. 11. 11. 자 전국승려대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이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인데, 위 승원주가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재직중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반론의 진위자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 종단은 석가세존의 자각자각(自覺自他), 각행원인(覺行圓滿)인 근본교리를 본체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경성성품(性成佛性), 정법도생(佛法度生)을 삼고 그 종지(宗旨)로 하고, 종헌, 종법 등 자율규범을 마련하여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종교

단체이다. 나. 신청인 종단에는, 종헌상 종단의 신성(神聖)을 상징하며 중흥을 계승하는 회교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종정 외에 상급 의결기관으로서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원로 비구로 구성되는 원로회의와 입법기구이자 의결기구로서 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8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총회가 있으며, 중앙총무 행정기관으로 총무원이 있는데, 총무원의 대표인 총무원장이 신청인 종단을 대표하고 총무행정을 총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하게 되는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총무원장의 해임을 위하여는 중앙총회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 후 원로회의의 인준을 얻어야 하고, 한편, 종단 비상사태는 원로회의 재직의원 3분의 2의 재정이 있으면 중앙이 중앙총회를 해산할 수 있다.

라. 1994. 11. 20. 경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여 1998. 11. 20. 자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신청인 승원주는 차기 총무원장 출마를 준비하였는데, 피신청인 유한수, 이태운, 이경근 등 신청인 종단 소속 일부 승려들의 위 승원주가 이미 1980. 경 신청인 종단 총무원장을 1회 역임한 바 있으므로, 1차에 한하여 총무원장 출마를 허용하는 신청인 종단 종헌에 의하여 위 승원주는 더 이상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다루었다.

마. 그 후 위 승원주는 1980. 경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후 약 6개월만에 타회에 의하여 총무원장직을 사임한 것을 들어 총무원장을 1회 역임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총무원장 출마를 정정하여 하였고, 1998. 9. 29. 신청인 종단 일부 승려들은 위 승원주의 총무원장 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등 신청인 종단내에 합의를 이루었는데,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 임명 권한은 1998. 10. 26. 및 같은 해 11. 6. 위 승원주의 총무원장 출마는 총무원장 2차 출마를 규한 종헌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임을 밝히면서, 신청인 종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종단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의 교시를 내렸다.

바. 그 후 위 승원주의 총무원장 출마를 둘러싼 대립이 더욱 심하여 지던 중, 피신청인 유한수, 이태운, 이경근을 포함한 신청인 종단 일부 승려들은 위 종정의 교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 11. 조계사에서 제2차 범불교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였고, 위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승려 및 신도들은 ① 위 승원주를 총무원장 직에서 해임하고, ②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일시 유보하고, ③ 종단의 위기를 수습하고, 신청인 종단의 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단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한시적 종단 최고기구인 정화개혁회의를 출범시키는 내용 등으로 결의하여 한 후 총무원 청사로 사용중인 범불교계 기체 건물들 강제로 철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2. 범불교계 기체 건물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총무원장 선거는 무산되었다.

사. 그 후 피신청인 유한수, 이태운, 이경근 등 위 전국승려대회에 참석한 승려들은 위 결의사항에 따라, 피신청인인 정화개혁회의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인 의정으로 신청의 재우성을 산출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불교계 기체 건물들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 청사로 점유, 사용하고 오고 있으며, 한편, 신청인 종단의 원로의원 일부가 1998. 11. 14. 자로 원로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총회를 해산하는 결의를 하고, 신청인 종단의 종정은 같은 날 신청인 총회의 중앙총회를 해산하였다.

아. 그 후 기존의 총무원청에서는 범불교계 기체 건물인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청을 총리하는 총무원 청사로서, 피신청인들의 점유로 인하여 사실상 신청인 종단의 종단행정이 마비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수차례 걸쳐 범불교계 기체 건물들의 강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입에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불교계 기체 건물들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 한편, 위 승원주의 임기가 같은 달 20. 자로 만료됨에도 후임 총무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자 신청인 종단의 중앙총회는 1998. 11. 16. 자로 총무원법을 개정하여, 총무원장 임기 만료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못하거나 총무원의 임기가 개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등의 순으로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위 승원주는 같은 달 19. 자로 총무원장 후보를 사퇴하였고, 현재 신청인 종단의 총무원장인 총무원장(법명: 도법)이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피보전권에 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은 통상 그 분쟁이 신앙과 교리를 둘러싼 것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상 그러한 분쟁의 해결은 종교단체 내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나, 그러나,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분쟁의 내용이 신앙과 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실질이 일반 시민 단체에서의 분쟁

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자치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분쟁은 위 승원주의 총무원장 출마의 객관적 여부를 둘러싼 대립에서 기인한 후 현재 기존의 총무원장 혹은 피신청인들중 중 어느 쪽에서 신청인 종단의 대표권을 가지는가에 그 분쟁의 핵심이 귀결되는 것으로서, 신청인 종단의 종헌과 그 하위 규범, 관례 등의 해석에 기하여 그 객관적 해결이 가능하고, 그 분쟁의 양상이 단순한 이념 내지 교리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양상을 띠면서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등 사법적 해결의 필요도 절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은 충분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범불교계 기체 건물들 점유하면서 신청인 종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종단의 최고권위자인 종정의 교시에 따라 1998. 11. 11. 자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고, 위 전국승려대회에서 위 승원주 해임 및 신청인 종단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의 출범을 결의하여, 그에 기하여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가 범불교계 기체 건물들 점유하면서, 신청인 종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범불교계 기체 건물들의 점유, 사용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룬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과연, 위 승원주를 해임하고, 신청인 종단의 모든 권한을 피신청인 정화개혁회의에 부여한 위 1998. 11. 11. 자 전국승려대회에서의 결의가 적법하거나 신청인 종단의 범불교, 관례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의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상기결단, 석가모니 부처 재세시부터 대소사의 사안에 대하여 전체 대중에 모여 각기 충분한 의견개진들 통해 만장일치로 합일된 의견을 창출해 내는 '산중공사', '대중공사'로 불리는 불교 교우의 의견수렴방식이 있었고, 신청인 종단내에서도 위와 같은 유례에 기반 '전국승려대회'의 존재가 초충원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다만, 신청인 종단내에서도 종헌을 최상위법으로 한 여러 내부 규율이 정하여져 있어 다양한 내부 규계를 비교적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문제들은 위와 같은 내부 규율 등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통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전국승려대회'의 개최 내지 그 결의에 대한 초충원적 효력 부여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승원주의 총무원장 출마가 종헌에 위배된 것인지의 점을 둘러싸고, 신청인 종단내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위 승원주가 그 출마를 정정하려 하였으며, 신청인 종단의 일부 승려들이 이에 반대하여 그 출마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등 위 승원주 선거가 파행으로 차달고 있었고, 만일 위 승원주 선거가 강행되었다면 신청인 종단 내부에서 더욱 큰 갈등이 초래되었을 것임은 내내히 짐작되기는 하나, 위 승원주 선거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 종단의 종헌에서 2회 출마를 규정하여 두고 있고, 그 하위 규범으로서 1994. 10. 13. 자로 제정, 공포된 신청인 종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된 후보의 자격심사를 하도록 하여(중 시행규칙 제33조), 그 자격이 없었음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후보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고(중 시행규칙 제34조), 당선 무효의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중 시행규칙 제39조), 피신청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규정들에 기하여 위 승원주의 총무원장 출마가 종헌에 위배되는 것임을 선거절차 전후를 통하여 주장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위 승원주가 위 총무원장 선거에서 재차 당선되고, 신청인 종단내에서 위 승원주의 총무원장 재차 출마가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피신청인들이 도저히 그에 승복할 수 없다면, 위 승원주의 당선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결국 위 승원주의 총무원장 출마가 2차 출마를 금지한 신청인 종헌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서, 종교단체 내부의 신앙과 교리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일반 시민 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을 것이므로, 사법기관에 그 분쟁의 효력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 그렇다면 위 승원주가 다시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신청인 종단 내부의 위와 같은 분쟁이, 통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초충원적 효력이 있는 '전국승려대회'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1998. 11. 11. 자 전국승려대회에는 그 소집 절차, 파벌을 초월한 승려 및 신도들의 참여 가능성, 실제 참여한 승려 및 신도들의 숫자, 그 결의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따질 필요도 없고 그 효력요건을 갖추지

4면 '가처분'으로 계속

불교의 수행은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초기불교에서는 四雙八輩(四向四果)라 하여 4단계 8과정을 수행의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불자는 수행의 4단계인 수다원(須陀洹), 사다함(斯陀含), 아라한(阿那含), 아라한(阿羅漢)이란 말이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수다원이란 예류(預流)의 음역으로 진리의 길을 발견하여 성스러운 수행자의 무리

에 합류함을 뜻한다. 머리를 깎고 승가에 들어가는 첫 출가가 여가에 해당될 것이다. 향(向)은 과(果)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예류향(수다원향)에서 사성제를 명료하게 보는 지혜의 눈을 얻으면 예류과(수다원과)에 이르게 된다. 사다함(일래·一來)은 수행의 경지가 깊어 천계에 태어났다가 한번 더 사람으로 환생하여 번뇌

와 삼독을 끊고 해탈할 수 있는 경지다. 아나함(불환·不還)은 육계에 다시 오지않는 자리이다. 더러움에 물든다는 뜻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세속에 몰입도 있어도 오욕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아라한(응공·應供)은 더 이상 배울것이 없는 수행의 완성 즉

목어 스님들의 本地風光  
부처님의 경지이다. 무학과(無學果)라고도 하며 다시는 생사에 유전하지 않는 자리이다. 대승불교의 화엄경에서는 초기 불교의 수행계위에서 따른 수행 단계로 '보살 10대'를 제시하고 있다.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쌓아 부처의 자리에 이르는 10단계의 계위를 말한다. 불교계의 원로 중진스님들을 '큰스님'이라고 부른다. 평소

는 큰스님들의 수행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가능하기 어렵다. 조계종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는 커녕 오히려 더 얼키고 설켜 복잡해지지 않더라는 큰스님들의 법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수십년 수행하신 법력으로 그 런일도 해결 못하나." "원로스님들 다 뭘 하시나." "큰 스님 이미지에 흠집날까 걱정입니다." "이번에 수행할친 다 들어

난 셈입니다. 본지풍광(本地風光)을 그대로 보여준것 아닙니까." 수행승수가 낮은 스님을 예경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님들은 이기회에 자신의 수행계위를 한바탕 점검해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조계종 사태에 연관된 스님들은 어느항 어느과에 속할까.

## 폭력집단 정화개혁회의에 대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지난 11월 11일 폭력사기집단 정화개혁회의의 측 승려 100여 명에 의해 강제점거상태에 놓인 총무원 청사 회복과 중단된 종무행정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 스님)이 제기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지법 민사 51부(재판관 신영철)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

### - 다 음 -

1. 정화개혁회의는 총무원 청사에서 즉시 퇴거하라.
2. 정화개혁회의는 원고 총무원의 정상업무 일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3. 본 소송비는 피고(정화개혁회의)가 일체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전 종정 월하스님의 권위를 앞세워 폭력적인 방법으로 종친야욕을 채우려던 일부 폭력승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방해왔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사부대중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폭력행위로 종친을 찬탈하려는 기도에 대해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판결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사법부의 이번 판단을 존중하며, 아무런 명분없이 청사를 점거하고 있던 정화개혁회의측이 즉각적으로 청사를 반환하고 종도 앞에 참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정부당국 또한 엄정하고 조속한 법 집행을 수행할 것을 아울러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이 정상화되기 위한 후속작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매듭짓고 종헌종법에 따라 선출될 차기 총무원 집행부에 안정된 종단을 인계인수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불기 2542년 12월 11일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도법